

무배당하나교육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하나교육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4년 4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임계리사 윤 기 수

이 유 서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암 등 질병 및 재해에 대한 위험보장과 함께, 부모생존시 뿐만 아니라 유고시에도 가입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에 부응하고자 「무배당 하나교육보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하나교육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하나교육보험 적립형 (월납)

무배당하나교육보험 거치형 (일시납)

2.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종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적립형	가입자녀	10년, 15년납, 20세납	월납
거치형	30세만기	일시납	일시납

3. 가입연령

보험종류	보험료납입기간	주피보험자(가입자녀)	종피보험자
적립형	10년납	0~3세 4세 5~12세 13세 14~15세	18~53세 18~47세 18~53세 18~47세 18~55세
	15년납	0~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8~54세 18~51세 18~47세 18~52세 18~48세
	20세납	0~11세 12세	18~55세 18~43세
거치형	일시납	0~15세	-

4.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5. 납입보험료 한도

월납 $\left\{ \begin{array}{l} \text{기본보험료 - 1 구좌 기준} \\ \text{월 8 만원 ~ 100 만원} \\ \text{추가납입보험료 -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함.} \end{array} \right.$

일시납 $\left\{ \begin{array}{l} \text{기본보험료 - 1 구좌 기준} \\ \text{500 만원 ~ 5000 만원} \\ \text{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함.} \end{array} \right.$

6.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7.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적립형 - 월납보험료 $\times 12 \times \min \{ \text{보험료납입기간}, 10 \}$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의 100%로 함

8. 저축계약 순보험료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저축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②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③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내부지표 + 외부지표) / 2

-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times 100$

- I: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 E: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 A: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

A₆: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₀: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외부지표 산출식 = (B1 + B2 + B3) / 3

- B1: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2: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3: 1년만기 정기에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정기에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에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에금이율,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 ④ ②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②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 ⑥ 부리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한다.
- ⑦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 ⑧ 3년 미만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연 3.0% 복리
2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80%, 3.0%)
3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90%, 3.0%)

9.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10. 기타

가. 학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가입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매년 해약환급금의 50%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자녀 경과 연령이 18세 이상이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제 4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 ③ 학자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학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액이 1구좌당 1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 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된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약관대출이율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동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

바. 이 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입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생존학자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생존학자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